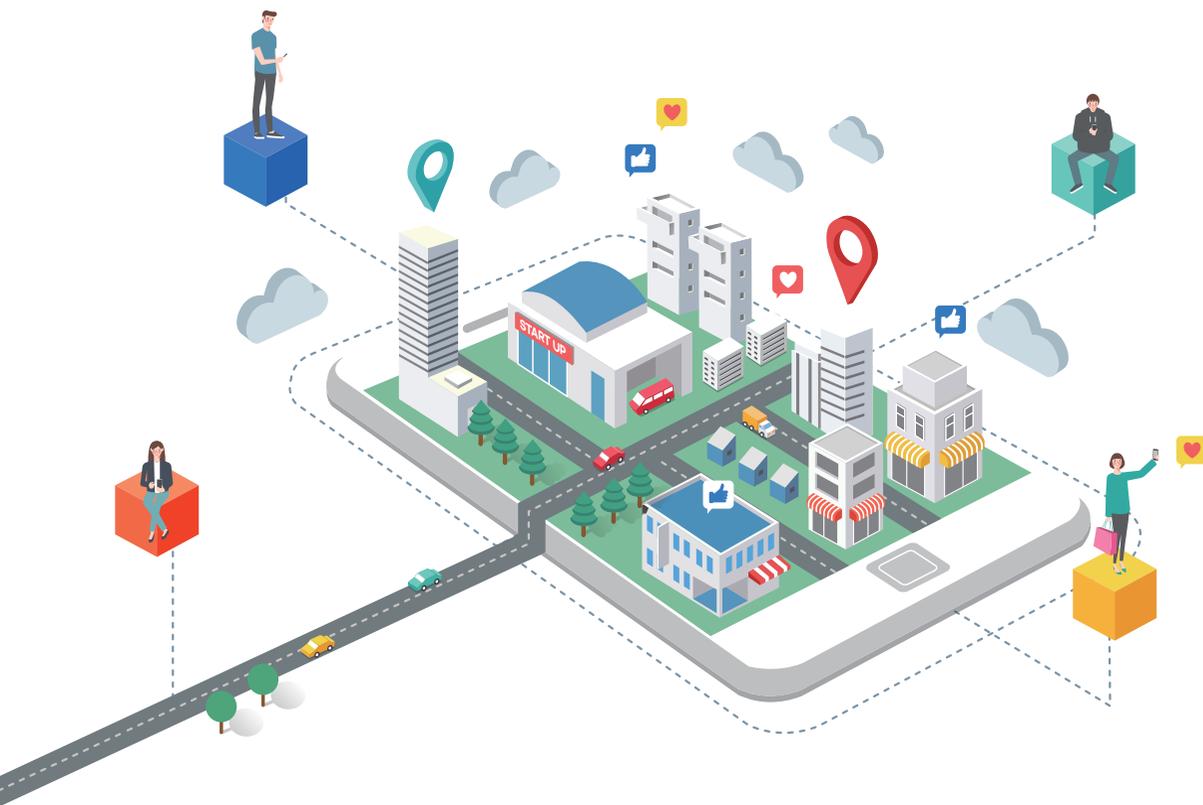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통해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통해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contents.

- 제1장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1.1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1.2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참여절차
- 제2장 **창업기업 확인 및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2.1 창업기업 확인
 - 2.2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2.3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활용방법
- 제3장 **창업의 정의 및 범위**
 - 3.1 창업의 정의
 - 3.2 창업의 범위
 - 3.3 2020년 10월 이후 달라진 창업의 범위
- 제4장 **창업기업 조달 우대제도**
- 별첨 **참고자료 및 FAQ**
 - 1. 주요 참고사이트
 - 2.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3. FAQ



제1장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1.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도입배경 및 목적)**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의 판로를 지원
-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지속 성장을 도모
-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새롭게 도입 (2020. 4월) 하고,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동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제도」를 동시에 도입하고, 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창업범위도 전면 개편 (2020. 10월)
-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8
-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
- **(인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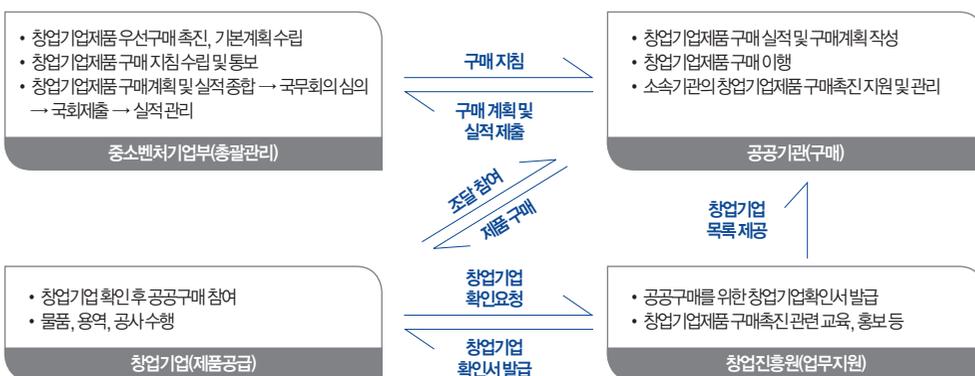
법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 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 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동법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체계



1-2.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참여절차

- 창업기업 확인 신청(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창업기업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공공조달 시장 참여(창업기업)

● 제도 참여 절차

주체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내용	확인서 신청 (cert.k-startup.go.kr)	확인서 발급 및 창업기업 목록 공유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구매 참여&실적 ↑



제2장

창업기업 확인 및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2-1. 창업기업 확인

-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여부 확인이 선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창업기업의 확인 등)

- ① 제5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9조의5제1항1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9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업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관

-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을 받으면 조사 후 확인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2.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업무



» 창업기업의 취소

-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창업기업 확인 취소 및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200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500	
나.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다.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00	



2-2.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
- 창업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은 확인서로 공공구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가능



●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체제



2-3.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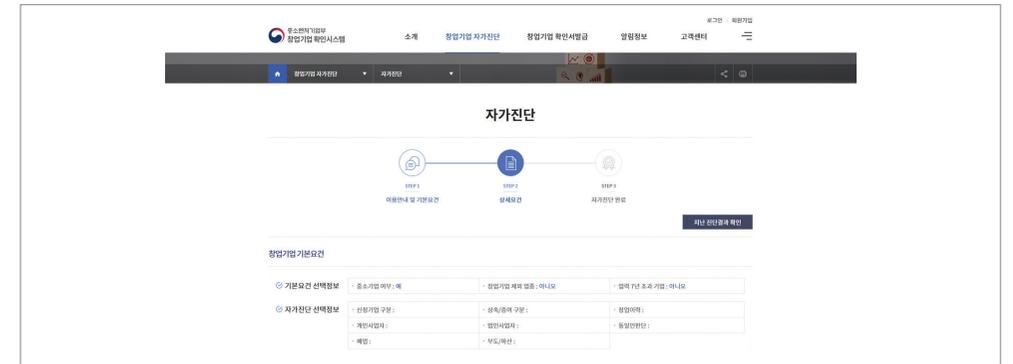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상에서 자가진단 및 창업기업 확인 신청,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구분	① 회원가입	② 확인서 발급 신청	③ 창업기업 여부 확인	④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단계별 처리내용	정보제공동의, 회원정보등록	자가 진단, 증빙자료 제출, 발급 신청	기본요건 등 창업 여부 판단 (시행령 제2조)	확인서 발급
처리주체	창업기업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 자가진단

-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자가진단 기능을 통하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전 창업여부를 직접 진단하고,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 가능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은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확인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
- 작성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여부를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





● 창업기업 확인서 양식 (예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발급번호 : 제 202012-62022-0000072 호

창업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 벤처천국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12-82-07294

3. 주 업 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시설관리업

4. 대 표 자 : 김창업

5. 주 소 (본점)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집현동)

유효 기 간 : 2020.12.16. ~ 2023.12.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120g/㎡]




● 창업기업 확인 절차 주요 내용

※ (창업여부 심사 요건) 중소기업 여부, 지원 제외업종, 업력(7년 이내) 등 기본요건 검토 후 → 창업이력, 기존사업자 폐업유무 등의 창업 인정범위를 확인



*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판단



제3장

창업기업 인정 범위

3-1. 창업의 정의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창업의 범위

>>(창업 예외 업종)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창업예외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5021 : 접객시설과 함께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각종 형태의 유흥주점
- 5022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 9240 : 카지노, 슬롯머신,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



>>(창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① (상속/증여)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개인 중소기업 추가 설립)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③ (폐업 후 창업)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3년 미만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후 2년 미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④ (개인의 법인 창업)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친족 포함)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시
- ⑤ (법인의 법인 창업)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 (해당법인과 임원 포함)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⑥ (조직변경)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임원”이란 합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조직변경] 상법 : 제242조(합명 → 합자), 제286조(합자 → 합명), 제287조의4(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제604조(주식 → 유한), 제607조(유한 → 주식),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영리법인 → 협동조합)



● 세법에 따른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의 범위

혈족 (6촌)	직계/방계존속	부계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고모, 삼촌, 종조부, 대고모, 등 6촌까지
		모계	외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외삼촌, 외증조부, 이조할머니 등 6촌까지
	직계/방계비속	부계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외고손자녀, 조카, 질녀, 증손자녀, 이손자녀 등 6촌까지
	형제자매		형제, 자매,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 6촌까지
인척 (4촌)	혈족의 배우자		종조모, 숙모, 고모부, 대고모부, 매형, 매제, 형수, 제수, 형부, 제부, 올케, 이모부, 외숙모, 외종조모, 외사촌 및 이종사촌의 배우자들
	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등 배우자인 남편의 위 친족들(직계비속 제외) 중 4촌까지 처부모 등 배우자인 아내의 위 친족들(직계비속 제외) 중 4촌까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위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들 (예) 남편의 사촌형수, 아내의 조카사위 등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

-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3-3. 2020년 10월 이후 달라진 창업의 범위

》창업 범위의 명확화

- 기준이 모호하였던 "승계"를 "상속 및 증여"로 범위를 명확화

》창업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판단

- 사업승계와 같이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

》폐업 후 창업의 인정

- 폐업 후 동종업종 창업 불인정→3년(부도/파산2년)후 인정

》동일 업종 판단 기준을 세분류→세세분류로 확대



● 예시

※ 세세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5자리 중 5번째 자리

대	중	소	세
J			
J	6	3	
J	6	3	9
J	6	3	9
J	6	3	9
J	6	3	9

세세	분류항목명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9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창업의 범위 신·구법 비교>

개정 전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정 후(2020.10.8)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 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창업기업 조달 우대제도

>> 제한경쟁 입찰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 **(주요내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 창업기업 우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호의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2호에 따른 창업자



별첨1

주요 참고사이트

유관기관 사이트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g.go.kr/>)

- **(운영목적)** 공공구매 수요자(공공기관) 및 공급자(중소기업)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구축, 양방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효율성 제고와 구매 촉진을 지원
- **(운영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 **(확인서 발급)** 직접생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기업확인서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운영목적)** 중소기업 일반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자원시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원, 기업경영전략 수립, 협력기업 발굴 등 지원
- **(운영기관)** 한국기업데이터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3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운영목적)**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 역할 수행

별첨2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공통
2	사업자등록증명	
3	중소기업확인서	
4	폐업사실증명원	해당자
5	상속/증여 확인서류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6	부도/파산 확인서류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서, 파산선고결정문 등)	

법인사업자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공통
2	사업자등록증명	
3	중소기업확인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등의 명세서(설립시), 주주명부(설립 및 신청시) 등	해당자
5	폐업사실증명원	
6	상속/증여 확인서류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7	부도/파산 확인서류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서, 파산선고결정문 등)	

* 상기 서류 중 일부는 행정정보공공이용 동의 시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별첨3

FAQ

1. 제도·법령

- **(질의)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무엇이고, 구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공기관의 연간구매 총액 중 일정비율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8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목표 비율 중 8% 이상의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질의) 창업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제상 정의가 없는 '사업승계' 의 개념을 삭제하고 승계에 의한 창업 불인정 사항을 상속·증여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를 추가 등록 시 창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기존 폐업 이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평생 창업이 아니나, 3년(부도·파산은 2년)의 불인정 기간을 제시하여 규정이 완화 되었습니다.
 4.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를 현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 에서 '세부분류' 로 하여 창업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창업기업 확인서 및 확인시스템 관련

- **(질의)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답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가진단을 통해 창업기업 여부 및 필요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절차는 [신청(대기) - 접수 - 진행중 - 완료]로 이루어지며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 **(질의) 확인서 발급에 별도로 비용이 있나요?**
- (답변) 창업기업 확인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질의) 확인서 발급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 (답변)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 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창업진흥원' 이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 **(질의) 확인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 (답변)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질의) 확인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나요?**
- (답변) 기업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 업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www.cert.k-startup.go.kr)' 내 FAQ란을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창업기업확인콜센터(국번없이 1811-3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를 통해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